



## 라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117조, 제153조, 제156조, 제161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선산문화회관의 원활한 관리·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인용조항 삭제에 따라 실효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안 제8조제1항에서 회관의 사용을 위한 사용료를 당초 ‘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’ 납부하도록 한 것을 ‘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도록’ 납부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고, 3일 이내 신청 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는 선산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조례 제10조의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공공기관이나 공공목적에 의한 사용료 면제가 아닌 다자녀·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